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경찰서장을 재난상황의 보고주체로 포함〉
■ 진선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340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서기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진선미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4. 7. 3.
3. 회부연월일 : 2024. 7.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제1항에 보고주체로는 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을 관리하는 기관·단체의 장을 규정하고 있음.

재난이 발생하거나 관할 혹은 소관 분야 재난상황에 대한 경찰의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최초 보고주체에서 빠져 있음.

최근 발생한 이태원 사고 당시 경찰이 보고주체에 정의되어 있지 않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인 행정안전부로 재난상황 보고가 누락됨.

이에 경찰을 재난상황의 보고주체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제1항에 포함 되도록 하여 신고에 따른 사건 보고 체계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및 제4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 소관 업무 또는 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난상황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¹⁾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을 신고·통보받은 경우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① 시장·군수·구청장, <u>소방서장</u> , 해양경찰서장,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을 관리하는 기관·단체의 장(이하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그 관할구역, 소관 업무 또는 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각각 행정안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① ----- ----- <u>소방서장, 경찰서장</u> ----- ----- ----- ----- ----- ----- ----- ----- ----- ----- ----- ----- ----- ----- ----- ----- -----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현행	개정안
전부장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 ----- -----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군수·구청장, <u>소방서장</u> , 해양경찰서장,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재난 발생을 신고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 <u>소방서장</u> , <u>경찰서장</u> ----- ----- ----- ----- ----- ----- -----.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제외)의 장 또는 국가핵심기반을 관리하는 기관·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관할 구역, 소관업무 또는 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상황,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하여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재난이 발생

한 경우 또는 재난 발생을 신고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²⁾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관할 지역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은 해당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그 상황에 대해 빠르게 인식하고 대응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면 그 발생 유형에 따라 경찰 또는 소방에 신고 또는 통보를 하게 되는 상황이 많을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재난발생 초기에 경찰이 상황을 인식한 경우 신속히 관련 기관 및 상급 기관 등에 보고하여 적절한 대응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재난상황의 보고·통보의무 주체에 소방서장과, 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하면서도 경찰서장은 제외하고 있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보고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³⁾⁴⁾.

이에 개정안은 경찰서장을 재난상황의 초기 보고의무 주체로 포함하여 사건보고 체계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가 타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① 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을 관리하는 기관·단체의 장(이하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그 관할구역, 소관 업무 또는 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 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재난 발생을 신고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이태원 참사’ 112 신고, 행안부 상황실은 왜 몰랐나?, 2022. 11. 3. KBS

4) ‘경찰 엉망진창 체계…윤희근보다 대통령실에 먼저 보고했다’, 2022. 11. 2. 중앙일보

당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재난에 대한 초기 대응을 보다 강화하려는 입법목적과 경찰청의 입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경찰청은 개정안과 관련하여 ① 경찰청 훈령인 「치안상황실 운영규칙」에 이미 중요 치안사항⁵⁾ 발생 시 상급에 보고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규정⁶⁾되어 있고, ② 현행법에 이미 경찰관서의 장이 업무수행 중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긴급구조기관의 장(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등에게 알리도록 규정⁷⁾하고 있어 현행법 규정으로도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에 충분하며, ③ 재난상황의 보고·통보 의무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의무이므로 긴급구조지원기관⁸⁾인 경찰에

5) 「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제10조 ① 상황보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수시보고 : 중요 치안상황 발생 및 조치내용에 대해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기관장 또는 상급기관(정부조직법상 상급기관 포함)에의 보고. 다만, 별표 3에 해당하는 사건·사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별표3 대형화재사고(사망 5명, 사상 10명 또는 물적피해 50억원 이상), 안전 및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사망 3명, 부상 10명 또는 물적피해 5억원 이상) 등

6) 「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제12조(통보) ① 상황실장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시보고할 경우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능에도 통보하여 치안상황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등 다른기관의 협조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요청사항을 통보한다. ② 상황실장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시보고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9조(재난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업무수행 중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그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등을 받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대해서도 규정하는 것은 당초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9